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0. 24.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3년 10월 10일

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3년 10월 19일

라. 상정일자: 제2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3. 10. 2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가.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은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영등포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감면대상자

-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자”라 함)
-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하고, 이하 “유가족”이라 함)

○ 감면내용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한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구세) 면제한다.

○ 기 타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동의안은 2023년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사망한 자와 이로 인해 고통받는 그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등에게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 중 ‘구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제하려는 것으로, 직권 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누락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신청을 통한 감면을 병행하고,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면규모는 총 2건으로서 76,580원으로 추계하고 있음.

- 검토 결과

- 본 동의안은 행정안전부 지침인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통일된 지방세 감면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호우로 인해 고통 받는 유가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재산세 면제를 통해 호우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의 세 부담 경감에 일부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안 번호	제 236 호
----------	---------

제출년월일 : 2023. 10.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는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 나.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영등포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호우 피해 지역인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23.7.19.)

* 13개 지자체: 세종시, 충북(청주시, 괴산군), 충남(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전북(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경북(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

2. 주요내용

가. 감면대상자

-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자”라 함)
-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하고, 이하 “유가족”이라 함)

나. 감면내용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한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구세)를 면제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지방세 감면규모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